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6년 01월 16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사명 : 글로벌원자산운용 주식회사
(영문명) Global One Asset Management Co.,Ltd
(홈페이지) <http://www.g1am.co.kr>

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한양빌딩 4층
(전화) 02-3451-9100

대표이사 : 오희열

담당임원 : (직책) 전무
(성명) 조성진 (전화) 02-3451-9100

작성자 : (직책) 대리
(성명) 정지영 (전화) 02-3451-9100

제출이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6-1호)

소송 등의 제기 (1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 청구의 소
2. 원고 · 신청인	일반투자자 (허OO 외 1명)
3. 청구내용	1심 판결 전부 취소
4. 관할법원	서울고등법원
5. 향후대책	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
6. 제기일자	2025.10.29
7. 확인일자	2025.12.11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투자자 보호 위반 및 운용사의 선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다툼.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제기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